



정부의 법안을 보완하지 않고,『국가과학기술특별법』을 의원발의한 이유는 정권교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없는 과학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특별법” 입법의 필요성

1. “국가과학기술특별법” 제안 이유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흥여부가 국가경제의 흥망과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팽배되고 있으며,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시대를 대비하고 경제발전과 선진복지국가구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6년 11월,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원래의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미흡하여 그 법이 그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협의과정에서 과기처의 의지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삭제된 조항과 필요한 법조문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국가과학기술특별법』에 담아 의원 입법으로 동년 12월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을 보완하지 않고,『국가과학기술특별법』을 의원발의한 이유는 정권교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없는 과학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기처의 인식부족과 재경원에 대한 눈치보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입법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 '96년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입법 추진했던 “과학기술혁 신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지난 96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측에서 제출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5년 한시적으로 유효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법안 명칭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정 호 선
국회의원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



그러므로 정부측 법안처럼 선언적이라기 보다는 공청회등을 통해 검증 되었듯이 구체적 실천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정신에 맞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뜻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기때문에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은 분명 한 목소리라고 볼 때, 특별법 조문에 특단의 고려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입법추진했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육성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범인만큼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그 시행을 뒷받침할 정책수단이 담겨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과학기술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비상임기구로 명시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3. 의원발의된 “국가과학기술특별법” 주요 내용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까지 육성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그 시행을 뒷받침할 정책수단을 담았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본 제정법안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과 국력의 원천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바, 21세기 과학기술혁신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5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양양하는 등 과학기술력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골자

첫째,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을 위하여 200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투자 예산을 정부총예산중 5%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기초과학지원 예산은 국가연구개발

21세기 과학기술혁신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5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양양하는 등 과학기술력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투자액의 30%이상이 되도록 명시하며, 둘째, 범 국가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특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처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투자확대를 포함하는 국가과학기술특별계획을 수립하고,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연구개발평가원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며,

다섯째,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공제조합의 설립, 연구기관의 안정과 소속 연구원의 신분보장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향후 5년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차기정권이 들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없이 과학기술혁신이 이뤄질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의원과 공동 발의하였고,

경제발전의 근간이 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21세기 과학기술혁신시대를 대비하고 경제발전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으나, 과기처의 인식부족과 재정경제원에 대한 눈치보기로 지난 '96년 정기국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영시켜 진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첨 부(정부 및 과기처 자료)

1. '96년 4월 과학기술장관회의시 특별

법 제정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 요지

1) 의장(재경원장관) : 5년한시법이므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추진전략이 명확해야 함.

2) 국가기술자문회의 : 기존 법(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등)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 중에서 21세기 초까지 특별히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이것을 특별법에 담아야 함.

현 추세로는 정부비율이 계속 떨어져서 2000년대에는 10%정도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 특별법에 특단의 고려가 있어야 함.

2. 김영삼대통령의 과학기술입국선언(95년 7월 23일 재미한국인 과학기술자 초청 간담회시)

“나는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초과학진흥, 첨단기술의 확보 등 3대과제에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3.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진흥법을 보완하지 않고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

“특별법에는 타부처 소관사항,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고 범부처 관련사항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예산 증대 등 정부투자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

◎ 의원발의된 “국가과학기술특별법”과
정부측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대비

“국가과학기술특별법”(의원발의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가. 科學技術處長官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家研究開發事業 및 基礎科學의 劃期的인 投資擴大를 포함하는 國家科學技術特別計劃을 수립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同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도록 함(案 第3條)	가. 科學技術處長官은 科學技術長官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家研究開發事業의 投資財源의 擴大·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推進 등을 포함하는 科學技術革新5個年計劃을 수립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同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도록 함(案 第3條).
나. 凡 國家次元에서 國家科學技術特別計劃을 效率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 事務處理를 위한 事務局을 設置함(案 第4條, 5條).	나. 政府는 國家研究開發事業의 投資財源의 擴大目標 및 推進計劃에 따라 財政의 범위안에서 研究開發投資를 확대하고, 教育·國防 및 環境分野 등에서의 科學technology豫算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案 第5條).
다. 科學技術의 劃期的 振興을 위하여 2002년까지 國家研究開發事業의 政府投資豫算을 政府總豫算中 5%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基礎科學支援豫算是 國家研究開發事業投資額의 30%가 되도록 명시함(案 第6條, 第8條).	다. 政府는 國家研究開發事業을 效率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同事業에 대한 종합적인 情報管理·流通體系를 구축하도록 함(案 第6條).
라. 國家研究開發事業에 대한 調査·分析·評價業務를 전담하기 위한 研究開發評價院을 國務總理 소속하에 設置·運營함(案 第7條)	라. 政府는 科學technology革新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을 선정하여 同事業의 추진을 전담할 研究共同體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함(案 第8條).
마. 特定研究機關育成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研究機關의 安定과 소속 研究員의 身分保障 및 研究活性化를 위한 法的 根據 마련(案 第10條).	마. 政府는 新技術開發結果의 企業化 촉진 및 技術集約의 中小企業의 지원을 위하여 技術力評價에 의한 技術擔保貸出을 활성화하기 위한 支援施策을 강구하도록 함(案 第14條).
바. 科學技術人의 生活安定과 福利增進을 위하여 科學技術共濟組合을 設立(案 第16條).	바. 政府는 科學technology文化의暢達과 科學technology者 優待措置를 강구하도록 하고, 그 支援施策의 一環으로 科學technology文化財團을 設立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案 第17條 내지 第19條).